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. 11. 30 선고 2023가단111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11. 9.

판 결 선 고 2023. 11. 30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. 12. 26.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27.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22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국식

별지